

만 18세,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만 18세 이상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즉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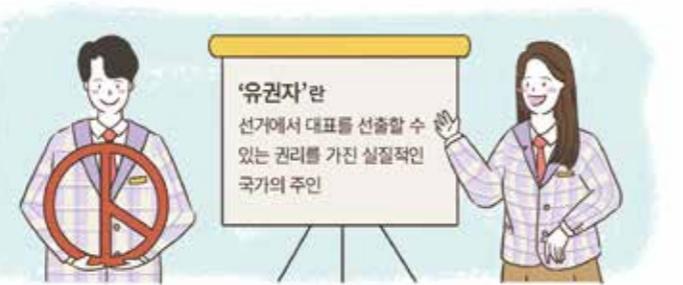
선거일을 기준으로 18세가 되는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도 '선거권자'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한 표를 행사해 보세요!

I 18세,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

■ 유권자의 의미

유권자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인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 선거권 연령 기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갖는 유권자는 2020년 4월 15일까지 만 18세가 된 사람입니다. 즉,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4월 16일 포함)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유권자의 교양



■ 투표로 만드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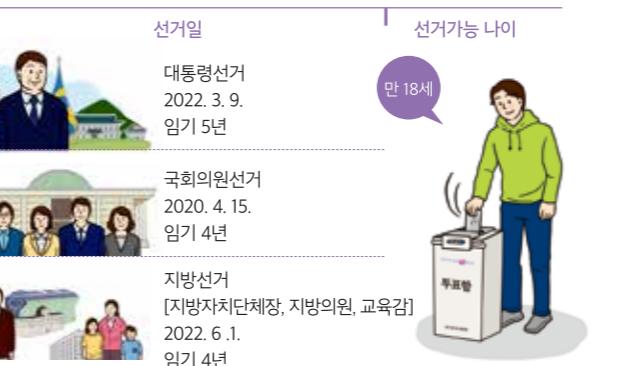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한 표가 언제,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결정할지 모릅니다.



투표 참여를 단지 선택할 권리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할 '우리의 목소리 내기'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II 선거, 어렵지 않아요!

■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



■ 선거과정 한눈에 보기



■ 투표, 이렇게 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4월 15일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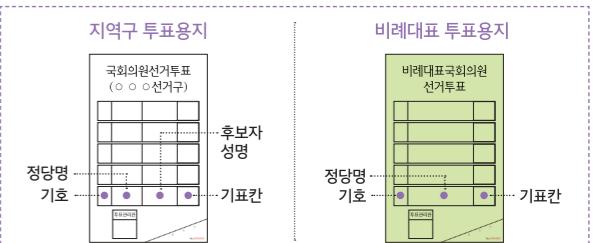
※ 신분증은 꼭 지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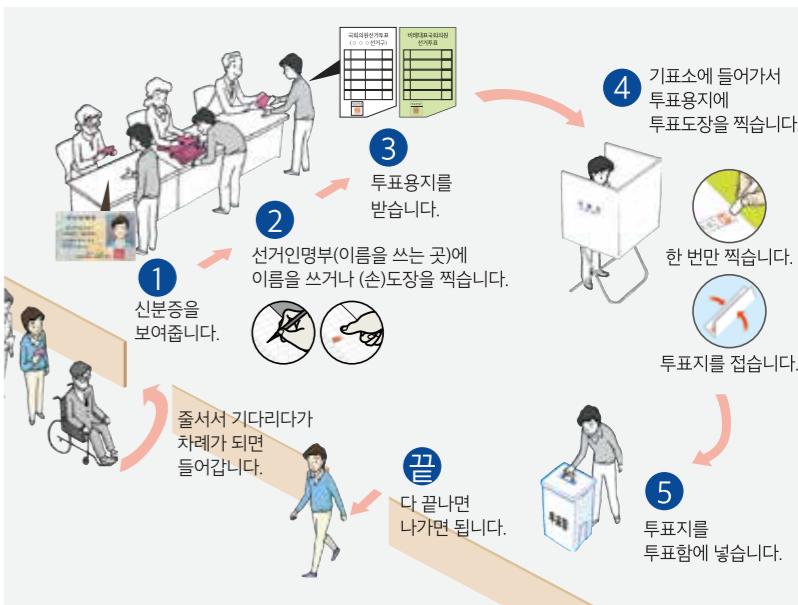
- 공공서 또는 공공기관 발행, 사진이 첨부된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자격증, 학생증(사립학교 학생증 포함)

■ 투표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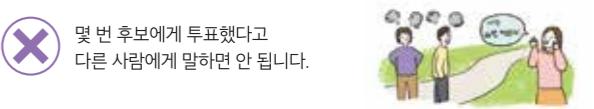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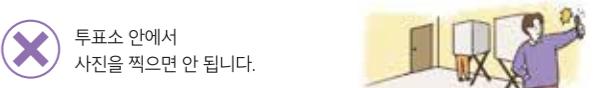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에게 한 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에 한 표, 색깔이 다른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 합니다.



■ 투표하는 방법



■ 올바른 투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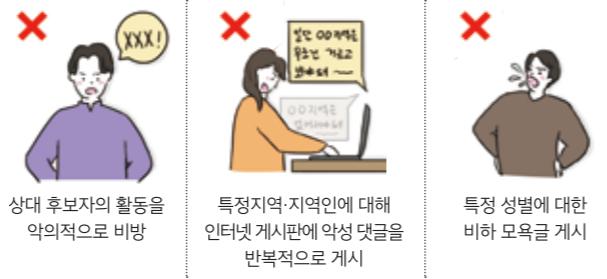
질문 있습니다!

■ 사전투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4월 10, 11일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안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관내선거인	관외선거인
해당 구·시·군 위원회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둔 선거권자	해당 구·시·군 위원회 관할 구역 밖에 주소를 둔 선거권자

■ 불법 선거운동



■ 정당·후보자 분석



■ 납세, 병역, 학력 등 후보자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후보자가 보유한 현금, 채권, 부동산 등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신고한 재산을 확인할 수 있어요.	후보자 본인의 국내(최종) 정규학력과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
후보자 본인 및 직계가족의 병역사항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어요.	후보자의 본인과 직계가족이 최근 5년간 납부 또는 청납한 소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후보자 본인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위 후보자 정보는 선거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 투표참여 캠페인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없이 투표소로부터 100M 밖에서 투표 참여를 금ع하는 행위	투표소 주변에서 투표 인증샷
투표소 밖에서 유명 정치인과 찍은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는 행위	기표소 내에서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용지 활용하는 행위
확성기나 인쇄물을 등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지지를 표시하는 행위	'어깨띠 등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 선거운동 내용이 포함된 투표참여 권리 행위

■ 인터넷, SNS 그리고 가짜뉴스 주의점



■ 뉴미디어 활용의 부정적 현상



III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법정 선거운동기간	평상시

IV 올바른 유권자가 됩시다!

■ 제 선택은 제가 할게요!



■ 선거정보 알아보기



Q 선거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선거운동은 만 18세 이상의 선거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도 학급 친구들과 함께 정당이나 후보자,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을 나누어보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은 선거일 기준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Q 내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이 있나요?

- 선거운동기간(4월 2일부터 14일까지)에 말과 전화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의 경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금지됩니다.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평소에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 트위터 등 온라인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기숙사에서는요?

- 학교의 교실은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개 교실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Q 옷에 좋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이 있는 배지를 부착하거나 모자 등을 착용할 수 있나요?

- 특정 정당, 후보자의 명칭이 기재된 배지 등 표시물을 배부·착용할 수 없습니다.

Q 친구가 사주는 식사를 먹는 것도 위반행위인가요?

- 평소처럼 친구가 사주는 식사를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친구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식사를 사준다면 사준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정중히 거절합니다.

Q 학교 동아리에서 후보자들을 초청해 공약을 듣거나 궁금한 점을 물어봐도 될까요?

- 동아리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로서 후보자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Q 투표소에서 기념사진을 찍어도 되나요?

- 투표소 입구에서는 짐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엄지손가락, V자 등의 표시를 하며 기념사진을 찍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표소 내에서는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Q SNS에 좋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소식이나 영상을 올려도 되나요?

-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소식이나 영상이 거짓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은 아니어야 하겠죠.